

☎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36 / 전송(02)793-8702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전지숙(6536)/ E-mail: kma-js123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-09709호

시행일자 2023. 11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개정 · 공포 알림 (질병관리청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-3613 (2023. 11. 1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고시가 일부개정 · 공포(2023. 10. 30.)되었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, 귀회에 전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

●주요개정

제2조(안전관리책임자 교육)

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, 그 후에는 **3년마다 보수교육**을 받아야 한다.

- 안전관리책임자 **선임 후 1년 이내** 교육 이수

※ **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**

-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

: 선임 교육 후 **매 3년 마다 보수교육**을 받아야 함

※ **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**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☞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(부칙 제1조)

※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,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

※붙임 :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(및 자료) 1부. 끝.

#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